

●법무부령 제1058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8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송부받은 때”를 “재판결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판의 결과통지표”를 “재판결과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 후 그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형집행정정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형집행정정지휘서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판결확정일로부터 4월이내”를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구신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로, “구신”을 “구신(具申)”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신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호적의 기재가 상이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해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집행지휘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르되,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집행유예의 실효등)”을 “(집행유예의 실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로, “형집행유예실효지휘서”를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

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제20조의 제목 “(집행유예의 취소등)” 을 “(집행유예의 취소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의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여부를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유형집행정지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자유형집행정지 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발생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출장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지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서등본을 첨부해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수 형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형 기	
	확 정	
형 기 기 산 일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비 고		
첨 부: 판결서등본 1통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정지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서등본을 첨부해 형집행정정을 지휘합니다.

수 형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형 기	
	확 정	
형 기 기 산 일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비 고		
첨 부: 판결서등본 1통		

○ ○ ○ ○ 검찰청

(-)

보호관찰 제 호

수 신: 보호관찰소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 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서등본을 첨부해 보호관찰명령(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피명령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죄 명		
판 결	선 고 일	
	확 정 일	
	기 간	
기 간 기 산 일		
비 고		
첨 부: 판결서등본 1통		

○ ○ ○ ○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검 사: 인

아래 사람에게 대해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형집행유예의 실효를 지휘합니다.

집행유예			재범		
피고인	성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죄명		죄명			
선고법원		선고법원			
선고일		선고일			
확정일		확정일			
집행유예기간	. . .부터	고의로 범한 범죄 일시	. . .		
	. . .까지	고의로 범한 범죄 죄명			
형명·형기	단 . . .년집행유예	형명·형기			
미결구금일수	총 일 (1심 일, 2심 일, 3심 일)	형기 종료일	. . .		
첨 부: 판결서등본(형집행유예) 1통, 형집행지휘서(재범) 1통					

○ ○ ○ ○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 검 사: 인

아래 사람에게 대해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를 지휘합니다.

집행유예			재범		
피고인	성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죄명			죄명		
선고법원			선고법원		
선고일			선고일		
확정일			확정일		
집행유예기간부터		고의로 범한 범죄일시	
까지		고의로 범한 범죄죄명		
형명·형기	단년간 집행유예		형명·형기		
집행유예실효지휘일 (미집자검거일)	(.)		상소권회복결정일	

첨 부: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사본) 1부, 상소권회복 결정문 1부.

○ ○ ○ ○ 검찰청

집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검 사: 인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아래와 같이 형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합니다.
형선고유예의 실효

유예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판 결	선 고	
	형 명 · 형 기	
	확 정	
유 예 기 간	시 기	
	종 기	

(청구사유)

1.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대상사건은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0000. 00. 0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취소청구 대상사건으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움

2.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대상자는 위 유예기간 중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 / 대상자는 별도 첨부한 판결서등본과 같이 0000. 00. 00.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음 /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움

○ ○ ○ ○ 검찰청

(전화번호)

형집

수 신: 지방검찰청 지청 발 신: 검찰청

제 목: [] 형집행유예 실효·취소통보 검 사: 인
[] 형선고유예

[] 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형법」 [] 제64조 의 [] 집행유예의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 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교도소(구치소)로 형집행을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집행유예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형명·형기

2. 재 범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생년월일: . . 생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정지지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형의 집행정지를 지휘합니다.

수 형 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세)
죄 명		
판 결	선 고	법원
	형 명 · 형 기	
	확 정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결 정 연 월 일		
정 지 사 유		
정 지 기 간		
조 건		
비 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에 필요하니 신원인수자에게 신원인수서를 받아 송부해 주시고 남은 형기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검찰청

(전화번호)

집

. . .

수 신: 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구치소장

검 사: 인

제 목: 남은 형기 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남은 형기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수형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죄 명		
형 명 . 형 기	징역 금고	년 월에 대한 남은 형기
미 결 구 금 일 수	총 일 (1심 일 , 2심 일 , 3심 일)	
남은 형기 기산일	. . .	
전 복 역 교 도 소	교도소 구치소	
사 유	형집행정지결정취소,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비 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형의 집행지휘 후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정지휘에 관한 절차 및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협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